

노동보험 사무 조합 제도

노동보험 사무 조합이란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생노동 대신의 인가를 받은 중소 사업주의 단체입니다.

노동보험 사무 조합에 위탁수속은

노동보험 사무 조합에 노동보험의 사무 처리를 위탁하려면 우선 「노동보험 사무 위탁서」를 노동보험의 사무 처리를 위탁하려고 하는 노동보험 사무 조합에 제출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가

- 금융·보험·부동산·소매의 경우 50 명 이하의 사업주
- 도매·서비스업 사업에 있어서는 100 명 이하의 사업주
- 기타 사업에서는 300 명 이하의 사업주

위탁할 수 있는 범위

노동보험 사무 조합을 처리할 수 있는 노동보험 사무의 범위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사무
2. 보험관계 성립신고, 임의 가입 신청서, 고용보험의 사업소 설치 신고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3. 산재보험의 특별 가입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사무
5. 기타 노동보험에 대한 신청,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또한 인지보험료에 관한 사무 및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금부에 관한 청구 등의 사무는 노동보험 사무조합이 수행하는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처리를 위탁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노동보험료의 신고 · 납부등의 노동보험 사무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하므로, 사무의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노동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3 회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나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특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 노동보험의 가입 수속을 하지 않은 사업주분은 지금 제일 가까운 노동기준 감독서 · 공공 직업 안정소에서 가입 수속을 합시다!
또 상담 · 문의에 대해서도,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